

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복지정책과)

제출일 : 2022. 11.

1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이 2022. 6. 22.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“22명”에서 “18명 이내”로 변경(안 제6조)
-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“13명”에서 “14명 이내”로 변경(안 제6조)
- 하남시감일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“11명”에서 “12명”으로 변경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인용 조항을 바르게 수정하고, 개정된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이 2022. 6. 22.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,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와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,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